

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2년 5월 15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년 4월 12일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2년 5월 14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2002년 5월 14일 제9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2년 5월14)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자치행정과장 신영선)

가. 제안이유

- 신규시설(공설묘지·체육시설)에 대한 관리인력 보강승인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신규시설 정원책정에 따라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
 - 총정원 521명 → 523명(증2명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512명 → 514명(증·2명)
 - 의회사무과의 정원 : 9명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- 본 조례는 평창군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조례임
-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상속인에게 자동차세를

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농업소득금액 신고기간을 1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하는 것이 주내용임.

○ 법령의 형식·절차·자구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